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5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3
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	7
※ 참고자료	11
1.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개요	11
2. 환경영향평가 관련 통계 자료	1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7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Ⅲ.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다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복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동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7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u>

- 1)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74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6. ~ 8. (생략)	<u>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지 말 것</u>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자</u> 6. ~ 8.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란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갖춘 사람 등을 말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²⁾을 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³⁾.

2)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종류]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특급 평가자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등
고급 평가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5년 이상 등
중급 평가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등
초급 평가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3년 이상 등

※ 출처: 환경부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복제 금지, 자료의 거짓·부실 작성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4),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 · 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자격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평가 업무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업무를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전문인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말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⁵⁾.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맡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 신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개정안은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공기업 등)이 환경영향평가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생략)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 제5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 6)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함)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⁷⁾,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따라 저가 발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 우려가 있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계약금액의 적용률]

종류별	계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비 고
계	54%	55%	53%	51%	
평가	57%	59%	56%	55%	
전략	62%	64%	61%	61%	
소규모	35%	37%	33%	35%	
사후	66%	67%	67%	60%	

※ 출처: 환경부

7)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상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에 개정안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행비용 현실화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충실한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사업의 특성 미반영, 발주기관 예산문제, 영세평가업체의 저가발주, 발주시 발주내역 미공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고려할 때⁸⁾, 개정안 수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환경부 용역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선 기초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① 현행 산정기준은 품셈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환경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공신력이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② 사업규모와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르게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에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의무화하는 경우 동 산정기준⁹⁾에 대한 개선이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선 기초연구 최종보고서(환경부) p.236

9)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0조에 따르면, 동 산정기준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개정되고 있지 않음¹⁰⁾.

둘째,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 제11)를 고려하여 발주청은 대행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10)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 대행제도 개요

- (환경영향평가 대행) 발주청이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신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 (환경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1종과 2종으로 구분('23.10월 현재 제1종 288개소, 제2종 68개소 등록)

- (1종) 환경영향평가 모든 분야에 대해 대행 가능
- (2종) 환경영향평가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해 대행(재대행) 가능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

분야	제1종	제2종(자연생태환경조사업)
업무분야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시·도 조례 평가서, 약식평가서 작성 대행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 영향 예측·평가 보전방안 마련
기술인력	환경영향평가사 등 10명	특급평가자 등 6명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최소 기술인력(제1종) >

분야	필요인원	기술인력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괄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사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자연생태 환경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토지환경	1명 이상	고급 평가자 이상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등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생활환경 기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등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일정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필요

- 기술등급에 따라 2년 ~ 15년 이상 평가실무 수행 경력 필요, 기술인력등록 후 1년 이내 최초교육 및 매 3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절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
특급 평가자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등
고급 평가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5년 이상 등
중급 평가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등
초급 평가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3년 이상 등

□ **(대행비용산정기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환경영향평가 대행 방법)** 발주청에서 대행업자의 기술·경영 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적합 업체와 계약

※ (절차) 발주처 공고 → 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 → 낙찰자 선정 → 계약

〈 세부평가기준상 입찰규정 〉

◆ **(입찰방식)** 1종-1종 공동도급(공동이행), 1종-2종 공동도급(분담이행), 1종(단독), 1종(재대행) 등 4가지 방식 가능

◆ **(세부 입찰방식)**

① 1종-1종 공동도급(공동이행) : 발주처 ⇔ 1종, 발주처 ⇔ 1종

※ 발주처가 1종 2개소 이상과 계약(1종 업체간 평가서 분담 작성)

② 1종-2종 공동도급(분담이행) : 발주처 ⇔ 1종, 발주처 ⇔ 2종

※ 발주처가 1종·2종 업체와 각각 계약(2종은 자연·생태 분야만, 1종은 그 외 전체 작성)

③ 1종(단독) : 발주처 ⇔ 1종

※ 발주처와 1종 1개소 간 계약

④ 1종(재대행) : 발주처 ⇔ 1종 ⇔ 2종

※ 발주처는 1종과 계약, 1종은 자연·생태분야를 2종에게 재대행

2. 환경영향평가 관련 통계 자료

□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 및 기술자 현황 (24.05.31.기준)

구 분	평가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전체 (A+B)	508	3,132	890	1,047	2,984	8,561
등록 기술인력(A)	503	2,306	461	594	1,211	5,075
미등록 환경영향평가기술자(B)	5	826	429	453	1,773	3,486

* 평가사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와 중복될 수 있음

□ 연도별 협의 건수

구분	전략	환경	소규모	사후	계
2022년	505	133	2,461	1,572	4,671
2021년	575	159	2,877	1,761	5,372
2020년	602	202	2,961	1,613	5,378
2019년	527	137	3,518	1,543	5,725
2018년	523	137	5,934	1,572	8,166
계	2,732	768	17,751	8,061	29,312

※ 5년 평균 : 29,312/5 = 5,862

□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대행금액 비율 분포

○ 총 199건의 표본조사 결과('22년), 대행 금액은 고시 기준 대비 약 54% 수준으로 확인

구 분	합계	평균	40% 미만	40 ~ 60%	60 ~ 80%	80% 이상
계	199건	54%	86건 (43%)	38건 (19%)	37건 (18%)	37건 (19%)
환경	40건	57%	12건 (30%)	8건 (20%)	12건 (30%)	8건 (20%)
전략	32건	62%	12건 (38%)	4건 (13%)	6건 (19%)	10건 (32%)
소규모	62건	35%	42건 (68%)	13건 (21%)	7건 (11%)	-
사후	65건	66%	20건 (31%)	13건 (20%)	13건 (20%)	19건 (29%)

※ 환경 57%, 전략 62%, 소규모 35%, 사후 66% 수준